

韓國側 事前質問事項 回答

(질문 1)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일본국으로부터 투자가 제일 많습니다.(2006 년말 현재 2,404 개) 최근 1년간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투자법인(자회사)으로부터 일본본사(모회사)가 배당 받은 규모(금액)를 세금 공제전 과 세금 공제후로 구분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킨키세리사회 혹은 각 세리사회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 기타 행정기관의 통계에도 질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2)

한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이 발생한 경우, 사례와 같이 과세관청에서 이전 가격소득금액 통지서 발송을 하거나 납세자가 이전소득의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정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전소득 발생 과세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법 소정의 기일까지 이전소득에 대하여 Libor금리를 적용한 법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회답)

우리나라에서는, 귀국과 같이 법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법이 아니며 대체로 단순하게 소득이 증대하는 차액부분만,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혹은 과세관청에서 경정처분을 하며, 새로이 납부하는 세액(본세)과 그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및 연체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처분의 경우, 납세자에게 이전가격세제에 근거하여 경정처분 통지를 합니다.

①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10%입니다. 다만, 새로 납부하는 세액이 당초의 신고납세액과 50 만엔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15%가 됩니다.(국세통칙법 제 65 조 제 1,2 항)

② 연체세액

본세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한 날의 익일 이후 2개월을 경과할 때 까지의 기간은 연 「7.3%」 이고, 그 이후는 「14.6%」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 「7.3%」의 비율은 2000년1월1일 이후 연단위로 적용하며, 연 「7.3%」와 「전년도 11월30일의 일본은행이 정한 기준할인율 + 4%」 중 낮은 비율을 적용 합니다.(2002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는 4.1%,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는 4.4%, 2008년1월1일 이후는 4.7%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통칙법 제60조 제2항)

또한, 연체세액의 계산은 계산기초가 되는 기간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기한내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그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수정 신고서가 제출되거나 혹은 경정통지서가 발송된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그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날 혹은 경정통지서가 발송된 날까지의 기간은 연체세액의 계산기간에서 제외된다.(국세통칙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에 대한 연체세액 중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에서 재무부장관이 당해 조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합의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면제토록 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제19항, 동 시행령 제39조의12 제12항 및 13항)

- 국외관련거래에 관한 독립기업간 가격에서, 권한 있는 당국간 합의가 된 경우
- 조약상대국이 대응적 조정을 한 경우
- 조약상대국이 대응적 조정을 할 때 환급하는 금액에, 환급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 중 계산기초가 되는 기간에서, 권한 있는 당국간 합의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붙이지 않는 경우

다만, 이 권한 있는 당국간 합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조약상대국이 이 전가격과세를 행하는 경우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한 기간에 대하여 연체세액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상호주의)이 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 국세청 HP 및 「이전가격과세 상해」 大藏재무협회)

(질문 3)

일본의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방법으로 외국세액 손금산입방식과 외국세액 공제 방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바, 외국세액 손금산입방식은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이 너무 많으며, 외국세액공제 방식은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3년간만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은 어떠합니까?

(회답)

현행의 세계로서는, 조정 불가능한 부분을 별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상 경험을 말씀 드리면, 외국의 법인세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생각되며 일본법인이 흑자로 다액의 납세액이 발생하고 있고, 한편 외국세액의 비율이 적게 되면 외국세액은 대부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의 면제방식입니다. 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2008년도 세제개정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4)

한국인이 일본소재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행정적 절차와 세부담(취득할 때의 세부담,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의 세부담, 양도할 때의 세부담)에 대하여 구분하여 알려 주십시오 .

(회답)

부동산 구입시 행정적 절차에 대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의 같으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소유권 등)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함이 일반적 입니다.

제출서류로서, 매도인 측은 「권리증(등기식별정보)」, 「인감증명서」 등이고, 매수인 측은 「주민표(또는 호적부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절차는 전문가인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구입시의 세부담에 대하여는, 취득시 및 보유시 그리고 양도시 다음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 취득시

인 지 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납부하는 국세)

등록 면 허 세 (부동산을 등기하는 자가 납부하는 국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납부하는 지방세 - 군, 도, 시)

▪ 보유시

고정 자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 - 리, 면, 읍)

도시 계획세 (市街化 지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 - 시, 면)

사 업 소 세 (특정한 시에서 일정면적이상 사업소용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납부 하는 지방세 - 리, 면, 읍)

소 득 세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한 국세 · 부동산 소득분)

주 민 세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한 지방세 · 부동산 소득분)

▪ 양도시

인 지 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시 납부하는 국세)

소 득 세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한 국세 · 양도소득분)

주 민 세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한 지방세 · 양도소득분)

(질문 5)

대기업을 중심으로 삼각합병 등의 조직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조세회피 방지책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요?

(회답)

(1) 삼각합병이란,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별도의 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수법이며,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의 대가로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이 교부된다.

(2) 조직재편 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 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에 과세되나, 적격조직 재편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구 주권의 양도손익을 이연 하도록 되어 있다.

(3)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의 방지규정이, 2007년10월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직재편 행위부터 적용되고 있다.

① 적격합병 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2의3)

특수지배관계(50%초과 자본관계)가 있는 내국법인간 (표의 A사와 B사)에 이루어지는 합병 중,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특정 輕과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의 모법인(표의 X사)의 주식이 교부되면 적격합병으로부터 제외된다.

②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의 과세특례(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3)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적격합병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합병 등에서 그 대가로 특정 경과세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합병 등에 따라 교부 받은 주식의 양도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구 주권에 대하여 양도익을 계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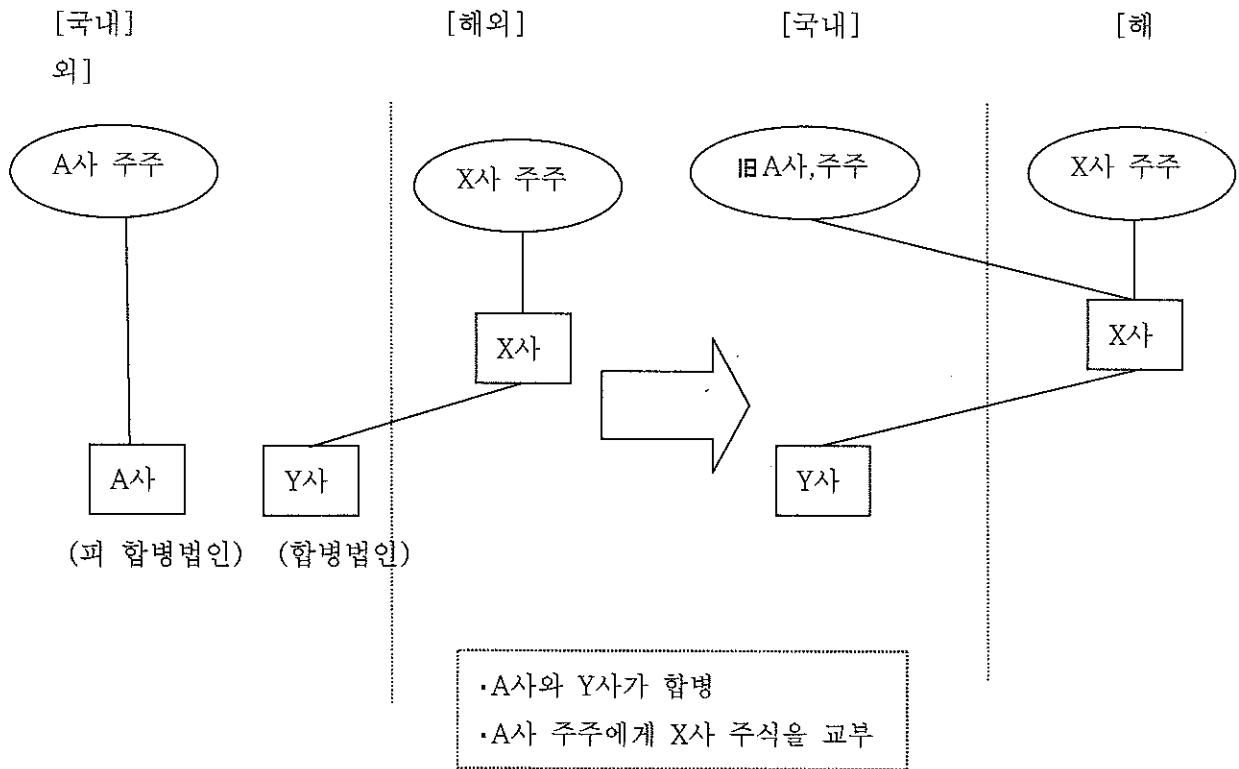
③ 포괄적 부인규정

2001년도에 개정된 포괄적 부인 규정에 대하여, 삼각합병의 해금과 아울러 합병 모법인을 대상에 추가하기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법인세법 제132조의2 : 조직재편에 관한 행위 또는 계산부인)

세무서장은, 합병 등에 관하여 다음에 계기한 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 법인의 법인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혹은 결손금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가 있다.

- i 합병 등을 한 일방법인 또는 타방법인
- ii 합병 등에 따라 교부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 (i의 법인을 제외)
- iii i,ii법인의 주주인 법인(i,ii의 법인을 제외)

「삼각합병」의 이미지



日本側 質問事項 回答

(質問 1)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과세범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과거(2000년 3월31일 이전) 수증자(일본국적 가진 비거주자)가 증여자(일본국적 가진 거주자)로부터 해외자산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적인 행위가 행하여져, 재판도 실시되었다. 그래서 2000년 4월 1일(조세특별조치법 69조 2항 개정)부로 아래 도해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범위의 개요도

상속인, 수증자 피상속인 증여자		국내주소 있음	국내에 주소 없음		
			일본국적 있음		일본국적없음
			국외거주 5년 이하	국외거주 5년 초과	
국내에 주소 있음		국 내 모 개 * 두 정 국 전 외 과 대 재 세 로 산	◎ 반 국 개 과 내 정 세 재 전 산 은,		국 내 개 정 산 전 대 과 로 세
국내에 주소없음	국외거주 5년이하		국 외 재 산 도 과 세		
	국외거주 5년초과				

거주자 (= 일본에 주소를 둔 자) 및 비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자(증여시점에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증여 전 5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자)가 증여자 혹은 수증자인 경우, 국외재산에도 과세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국적의 부모자식간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자라면 자식이 비거주자여도 증여세가 과세 되었으며, 부모자식 모두 비거주자여도, 그 어느 한편이 증여 전 5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를 둔 경우 증여세는 과세 되었다.

한국에서는, 과거 수 차례에 걸쳐 국외증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경위 및 개략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현재 한국의 세제에서는, 위 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과세되고 있습니까? 겸해서 알려 주십시오

회답 1

(1) 한국에서는 1950년에 증여세법이 제정 및 공포 되었으나, 1952년에 상속세법에 흡수 폐지되었습니다. 1996년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령칭 및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의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 4981호로 제정되어 1996년1월1 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이 개정되어 1997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국조법 제21조 [국의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 되는 경우(세액을 면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타인의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①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무제한 납세의무자)
②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한 납세의무자)

한편 이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비과세 · 감면되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2②)

(質問 2) 이전가격 세제에서의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자료에서는, ①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이하 6개의 산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것은, 전술한 ①부터 ③원가가산법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①부터 ⑤까지의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HP에 각 방법의 적용실적에 대하여는 나와 있지 않으나, ③의 원가가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제 과세처분은, ①부터 ⑥까지의 방법 중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회답 2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획일적으로 정해진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폐지되고 거래여건에 가장 알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기준이 요구되었으므로, 합리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국세청의 이전가격과세 처분에 관한 통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 구 법인세법(1995년 1월 1일 이전)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산출방법의 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전통적인 거래접근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의 순서로 적용 실례가 높은 실정이며 최근에는 업종별, 거래단위별로 접근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업종 및 거래내역	비 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제조업 및 용역의 거래	
재판매가격법	도매업등 유통, 단순가공업	
원가가산법	제조업 및 용역거래	공동설비계약, 장기구매약정
이익분할법	업종과 무관함	
거래순이익율법	업종과 무관함	
Berry ratio법	단순유통업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

(質問 3) 이전가격 세제에서의 사전승인제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사전확인제도(APA) 신청 전에, 세무당국이 사전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무당국에서도 사전상담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일본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요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일본판에 의한 사전확인을 상호협의를 동반한 사전확인, 신규신청이든 경신신청이든, 나아가 내용의 복잡성과 자료제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한편, 외국세무당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틀어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1건당 처리기간은 평균 2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내용에 의하면 사전승인을 요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 외, 실제로 APA신청 시에, 본 자료나 법령이나 통칙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진행 방법상 비책 등은 없습니까?

회답 3

한국에서도 APA 신청 전에 사전상담(Pre-filing conference)을 받고 있습니다. APA 사전상담이란,

○ APA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APA 신청가능 여부 등에 관해 납세자와 APA 실무팀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 주요 논의 및 검토 사항

- APA 신청 배경
- 신청기간 이전 신고한 영업이익율 등 세무신고 상황
- APA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 대상거래가 APA를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 특수관계 거래 및 비특수관계 거래의 구분 등 대상 거래 및 신청자의 범위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여부

APA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PA 평균 처리기간(2007.12.31 누계 기준)

- 쌍방 APA : 평균 2년 9개월 소요
- 일방 APA : 평균 1년 9개월 소요

2) 2007년 종결분 평균 처리기간

- 쌍방 APA : 평균 1년 5개월 소요(1년 4개월 단축)
- 일방 APA : 평균 1년 8개월 소요(1개월 단축)

3)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APA 현황(2007.12.31자 누계 기준)

(단위 : 건수)

정상가격 산출방법	일방 APA	쌍방 APA	합 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	-
재판매가격법	-	-	-
원가가산법	3	1	4
이익분할법	1	-	1
거래순이익율법	9	7	16
영업이익율법	2	2	4
총원가가산법	3	1	4
부가가치원가가산법	-	1	1
자산수익율	1	-	1
Berry Ratio	3	3	6
합 계	13	8	21

※ 세무조사를 통한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법과 재판매 가격법을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2007년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재판매 가격법의 적용 사례는 없음

APA의 접수, 심사 및 승인과 관련한 업무는 국제청 국제조세 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별로 4개팀(미국팀, 일본팀, 유럽1팀, 유럽2팀)을 운영 중입니다.

(質問 4) 국내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100% 감면되는 기간이 5년(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년과 3년의 차이점으로서, 어떠한 내용에 따른 구분입니까?

회답 4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기준에 해당됨과 동시에 다음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
-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6)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7)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8)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9)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이 중에서

위의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도가 크다고 보아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5년간 100%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質問 5)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①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주재원이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중 어느 쪽입니까?

②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대하여

귀국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제도는, 현재 일본의 세제에서는 없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대하여, 그 개요를 알려 주십시오

회답 5

① 해외주재원이란

여기서 해외주재원이란 넓은 의미에서 국외에서 근로하는 국외근로자로서 한국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시행령, 시행규칙 및 통칙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다.

- 1)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경우
- 2)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인 경우
- 3)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 4) 대한민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는 경우
- 5)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경우
-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직원인 경우

②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개요

본 규정은 해외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세특례규정으로서, 해외에 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자원개발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투자보다 그 원본의 회수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자원보유국은 외국인투자 법인 자체의 영업활동 소득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결산 후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도 조세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배당소득은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대국과 조세조약에 의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